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 운영지침

환경부자료 제공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재질·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포장재와 관련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이하 “사전평가제도”라 한다)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의 제조·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출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사전평가위원회”(이하 “사전평가위원회”라 한다)란 포장재 재질·구조 등에 대한 재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3.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라 한다)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평가하는 세부 기준으로 적합(사용가능), 조건부적합(사용자제), 부적합(사용불가) 등으로 구분한다.

제2장 사전평가 대상 및 기준

제3조(평가대상) 포장재 중 기존에 생산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 신규로 출시되거나, 기존 제품 중 포장재 자체의 재질·구조(라벨, 마개 등)를 개선하여 출시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내용물의 변경, 동일 용기에 새로운 브랜드로 출시되는 경우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사전평가를 위한 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1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3장 평가 절차

제5조(평가절차) ① 사전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접수된 제품에 대한 1차 서류심사 후 사전평가위원회에 송부하여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포장재 재질 · 구조 사전평가 품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사전평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전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포장재 재질 · 구조 사전평가 심의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전평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품포장재 관련 산업분야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2. 제품포장재 관련 분야에서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선임연구원, 박사 또는 기술사 이상의 동등 자격 및 경력소유자
3.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전문위원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전문위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사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환경부장관은 사전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사전평가위원회는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업무담당자 2명 이내, 제 5조에 따른 전문위원 6명 이상을 포함하여 총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사전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포장재 재질 · 구조 사전평가 최종 심의
 - 2.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 3. 대상제품의 재활용성 향상을 위한 권고
 - 4.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가이드라인 제 · 개정에 관련된 사항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전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여 상정하는 안건 논의
- ④ 사전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추천으로 정한다.
- ⑤ 사전평가위원회의 간사는 환경부의 담당사무관 또는 전담기관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8조(평가심의) ① 사전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사전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사전평가를 신청한 업체가 평가심의에 참여한 전문위원들에게 신청 제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사전평가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사전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의견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전평가 결과통보서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되, 부적합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사전평가 결과 적합관정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순환형 포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사전평가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사전평가 전담기관

제11조(사전평가 전담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사전평가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전평가 신청서 접수 및 1차 평가
2. 사전평가위원회 운영
3. 사전평가 결과 회신
4. 심의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5. 사전평가 인증서 교부
6. 사전평가제도의 사후관리
7. 사전평가제도 및 지정업체 홍보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전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전평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전평가제 성과분석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및 홍보 등

제13조(평가 대상 포장재 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평가를 받은 제품이 가이드라인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 결과 사전평가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사전평가제도 등 홍보) ① 환경부장관은 사전평가제도 및 재질·구조 개선 업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전평가제도 홈페이지 운영
2. 사전평가 결과 홍보
3. 기타 사전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사전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제품 홍보시 인쇄물 또는 광고물 등

에 사용할 수 있으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5조(비밀누설금지) ① 포장재 재질 · 구조 사전평가위원회에 참가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체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신청업체가 제출한 정보는 비밀로 간주되고 취급되도록 한다.
2. 신청업체의 정보는 포장재의 재활용성 평가 및 검토의견 제출의 용도로만 사용되며, 일체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신청인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업체의 직접적인 비밀유지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보기능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전평가위원회에서 업무상 얻은 정보와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윤리규정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 동 제도의 시범사업은 폐트병 포장재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전담기관은 (사)한국폐트병자원순환협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